

+ 대형 ·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실천과제(TOP3)

Top 3란 최근 3년간 사망사고를 기인물과 작업별로
교차분석하여 도출한 사망사고 다발 상위 3개 작업을
표현한 것임

!! 사고 사망

TOP1 정비작업중 기계에 끼임

- 조작전원키스위치 없는 기계 사용하지 않기!
- 정비, 점검 작업 시 조작전원스위치 키는 작업자 주머니에!



TOP2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에 부딪힘

- 지게차 운전은 유자격자만 하기!
- 지게차 주변 1m이내에 접근하지 않기!



TOP3 용접작업 중 화재 · 폭발

- 용접작업은 유자격자가 안전작업허가를 받고 하기!
- 용접작업 전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하기!



!! 질식, 중독

TOP1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 중독

-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하기!
- 밀폐공간 작업은 환기시설과 함께!



TOP2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중독

- 통풍이 안되는 장소에는 연소기구를 사용하지 않기!
- 지갈탄사용 콘크리트 양생장소는 연탄가스 조심!

TOP3 독성물질 취급 중 급성중독

- 화학물질 취급시에는 환기장치 가동하기!



제출기관 연락처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기 관 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02-6711-2841
서울북부지사	서울시 중구 칠패길 42(봉래동 1가) 우리빌딩 7층	02-3783-8312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11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교동, 정관빌딩) 3층	033-820-2511
부산지역본부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부곡동)	051-520-0524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8번길 5(신정동)	052-226-0552
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용호동)	055-269-0552
경남동부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양산노동종합청사 4층	055-371-7523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빌딩 8,9,11층	062-949-8743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 고용노동부 종합청사 4층	063-240-8533
전북서부지사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청사동) 2층	063-460-3622
전남동부지사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061-689-4954
전남서부지사	전남 무안군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061-288-8705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 2동)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064-797-7502
충북지역본부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	032-510-0511
경기남부지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0층, 13층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31-259-7124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28-1919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고잔동) 2층	031-481-7513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17번길 3 (금곡동) 소곡회관 2층	031-785-3322
부천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상동) 대신프라자 3층	032-680-6518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9,20층	053-609-0522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053-650-6833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054-271-2034
경북북부지사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임수동)	054-478-8012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문지동)	042-620-5611
충북지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가경동) KT빌딩 3층	043-230-7121
충남지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041-570-3423

2015-안전-132



모기업 - 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발전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으로

해결하세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이란?

모기업(원도급업체)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 · 시행함으로써,
모기업은 협력업체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고,
공단은 현장기술지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에 대한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이행을 공고히 하는 한편,
모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공생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수립 · 시행 대상

- 업종: 제조업, 전기업, 통신업, 서비스업, 운수창고업
* 조선업은 「안전보건 이행평가제」, 건설업은 「건설업 안전 보건 공생사업」에 따라 별도 추진
- 대상: 원 · 하청 100인 이상 모기업 및 협력업체

■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제출

- 제출 기간: '14.3. 2(월) ~ 3.13(금), 2주간
-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장현황조사표, 참여협력업체현황, 세부계획서, 4대 안전수칙준수서약서]
- 접수처: 모기업 사업장 소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안전보건공단 연락처 참조]

■ 참여 사업장에 대한 등급평가 관리

-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참여 사업장별 등급부여
 - － A 등급
 - 다음년도 1년간 산업안전보건 감독 유예(고용부)
 - 다음년도 1년간 KOSHA 18001 사후심사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공단)
 - － B 등급
 - 인센티브 없음
 - － C 등급
 - 2회 연속 'C' 등급 평가 시 안전보건개선계획 또는 안전보건진단 명령(고용부)

■ 프로그램 추진 우수 사례

- 프로그램 참여사업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7월중)
※세부 일정 확정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사업장에 안내 예정
- 우수사례 홈페이지 게시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산업안전 →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 추진사례



프로그램 추진 절차 및 내용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구성항목

A. 공생협력 추진의지

1.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수준

B.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 적정성

1. 안전보건 공생협력 규정 작성 · 공유
2. 안전보건 공생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
 - 2.1.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
 - 2.2. 협력단 구성의 적정성
 - 2.3. 협력단 활동의 적정성
 - 2.4.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지원 계획 수립 · 이행
3. 공생협력을 위한 예산 편성 · 집행의 적정성

C.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시 만점부여 가능)

1. 위험성평가 계획(P)
 - 1.1.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 1.2. 위험성평가 수행조직의 적정성
 - 1.3. 위험성평가 대상공정, 작업의 분류에 필요한 정보 수집 · 활용
2. 위험성평가 이행(D)
 - 2.1. 위험성평가관련 교육 실시 여부
 - 2.2.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2.3. 위험성 크기 추정
 - 2.4. 위험성 결정
 - 2.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3. 위험성평가 이행확인(C)
4. 지속적 개선(A)
5. 기록

D.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 평가

1. 계획대비 이행도
2. 적용 법규의 준수 정도
3.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정도
4. 만족도 조사 및 환류
 - 4.1.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 4.2. 협력업체 애로 및 개선요구 사항의 반영 수준

E. 협력업체 자율안전보건 실행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

1. 자율안전 실행수준 : 참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비율
2. 재해발생수준
 - 2.1. 참여 사업장의 전년대비 재해율 감소율
 - 2.2. 참여 사업장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여부



산재예방요율제 안내

■ 산재예방요율제란?

-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 실행하는 활동

** 사업주 교육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 적용대상 :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

※ 일괄계속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일 경우 가능

- 적용방법

산재보험요율 인하율

사업주교육 인정: 10%
위험성평가 인정: 20%

※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요율(징수법 참조)을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괄 계산하여 산재보험요율을 인하
－ 관련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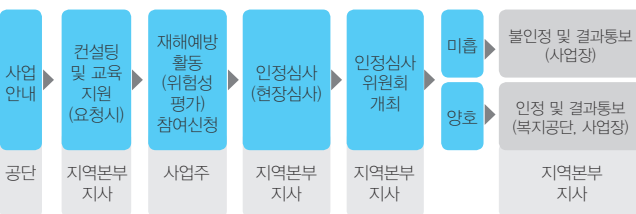
- 인정 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교육 인정 1년

*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일괄계산)

- 업무 처리 절차

* 산재예방요율의 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수행(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 → 보험요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절차



■ 『사업주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 절차

